

日本の銃器情勢와 對應

I. 銃器에 대한 法規制

1. 概 要

日本은 銃器規制와 關聯하여 銃砲刀劍類所持等團束法(경찰청 소관. 이하 「총도법(銃刀法)」이라고 한다.)에서 총포류의 所持·輸入·發射 등의 주요사항을 規制하고 武器等製造法(通商産業省 소관), 火藥류단속법, 그 밖에 關稅法, 關稅定率法,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등서 총포류의 製造·販賣·輸入 등에 관하여 補完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銃砲類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準刑法으로서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航空危險發生行爲等處罰에關法律 및 輕犯罪法에 別칙이 規定되어 있다.

2. 권총등에 대한 規制

銃砲중 권총등은 對人殺傷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에 대한 벌칙도 다른 銃砲에 관계되는 벌칙에 비교하여 특히 무겁게 되어 있다.

권총등의 所持가 適法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警察官 등 公共機關이 所持하는 경우와 권총 사격경기 참가선수가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所持하는 경우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總數도 1994년(平成 6년)말에 65정에 지나지 않는다. 권총등의 製造(개조 및 수리를 포함한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工場 또는 事業所마다 通商産業大臣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건수는 1995년(平成 7년) 4월 현재에 49건이다. 권총에 한해서 보면, 허가를 받아 권총을 製造하고 있는 기업은 1社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製造를 하지 않고 권총등의 販賣만을 하는 事業은 日本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권총등을 公共場所에서 發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피해발생의 有無를 막론하고 그 소지 행위와는 별도로 處罰의 대상이 되어 있다.

권총등의 輸入은 日本內에서 권총등을 適法하게 소지할 수 있는 者 또는 그 委託을 받은 者에 한하여 認定되고 있다.

권총에 관해서는 그 주요부품인 銃身, frame, 회전탄창 또는 slide에 관해서도 所持, 製造, 輸入, 讓渡 및 讓受에 관한 규제가 있으며, 완성품인 권총의 소지를 適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이러한 行爲가 許可되고 있다.

아울러 권총의 密製造 防止觀點에서 개조위험성이 있는 모의총기의 판매목적 소지가 禁止되어 있고 犯罪防止의 觀點에서 권총과 유사한 外觀을 가진 모조권총(model gun) 소지가 禁止되어 있다.

권총 등에 관한 주요 罰則은 末尾의 付表와 같으며, 1993년(平成 5년) 및 1995년(平成 7년)의 銃刀法 개정에 의해서 한층 더 重罰化되어 있다. 일본으로의 권총등 密輸入의 未遂行爲 및 密輸入의 準備行爲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국에서의 행위이더라도 일본법상 處罰이 가능하다. 한편, 권총 등의 不法所持者가 권총등을 제출하여 自首한 경우에는 그 죄를 減輕 또는 免除하는 규정이 있다.

3. 獵銃에 대한 規制

獵銃(散彈銃 및 rifle총)에 대한 규제는 권총등의 규제 다음으로 嚴格하며, 그 소지는 일반적으로 禁止되어 있다. 獵銃을 狩獵, 有害鳥獸驅除 또는 標的射擊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 있는데, 허가에 있어서는 연령, 범죄전력, 정신적 결함의 유무등이 엄중하게 審査될 뿐만 아니라, 지식, 기능의 쌓방에 관하여 敎習을 수강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또, rifle총에 관하여는 원칙으로서 散彈銃을 10년이상 適法하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가 주어진다.

狩獵, 有害鳥獸驅除 또는 標的射擊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博覽會나 博物館에서의 展示등 사회적 有用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類型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所持가 許可된다. 護身을 위한 獵銃의 所持는 권총과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 소지되고 있는 獵銃의 수는 1994년(平成 6년) 말에 산탄총 381,789정, rifle총 35,599정, 계 417,388정이다.

獵銃의 제조 또는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製造所 또는 店鋪마다 都道府縣 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1995년(平成 7년) 4월 현재의 허가건수는 製造所 592건, 販賣所 777건으로 되어 있다. 1994년(平成 6년)의 獵銃의 製造數는 233,310정, 出荷數는

233,021정(8,731백만엔)이며, 出荷의 96.9%인 225,781정(8,333백만엔)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4. 그 밖의 裝藥銃砲 및 空氣銃에 대한 規制

日本에서는 拳銃등 및 獵銃 이외의 裝藥銃砲나 空氣銃에 관해서도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許可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지는 일반적으로 禁止되어 있다. 許可가 가능한 類型은 총포의 종류마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許可시에는 연령, 범죄전력, 정신적 결함의 유무 등에 대한 審査가 이루어진다. 1994년(平成 6년)말 현재 許可를 받아 소지되고 있는 그 밖의 裝藥銃砲의 數는 건설용타정총 40,189정과 분쇄총 588정 등, 합계 45,495정이며, 허가를 받아 所持되고 있는 공기총은 空氣拳銃 541정을 포함시켜 35,287정이다.

空氣銃의 제조 또는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獵銃과 마찬가지로 知事許可를 받을 필요가 있다. 1994년(平成 6년)의 空氣銃의 製造數는 239,158정, 出荷數는 236,944정(759백만엔)이며, 出荷의 99.6%인 235,958정(710백만엔)가 海外로 수출되었다.

5. 實彈에 對한 規制

銃砲에 사용되는 實彈은 火藥類團束法の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實彈의 讓渡, 讓受, 輸

入 및 消費에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허가(火藥류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관하여는 都道府縣 知事)가 필요하다. 한편, 소지에 관하여는 適法하게 실탄을 讓受받은 者등에 한하여 소지가 용납된다.

實彈의 제조업 및 판매업에 관하여는 火藥類團束法 및 武器等製造法の 규정에 의한 通商産業大臣 또는 都道府縣 知事の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권총실탄에 관하여는 銃刀法에 의한 規制 下에도 놓여 있어서 所持, 輸入, 讓渡 및 讓受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됨과 동시에, 권총 본체와 같이 권총실탄의 不法所持者가 해당 실탄을 제출하여 自首한 경우에는 그 죄를 減輕 또는 免除받게 되어 있다.

6. 銃器管理, 銃器團束 등에 關係하는 機關

銃器管理의 행정사무에 관계하는 기관은 소지허가등을 담당하는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와 제조허가등을 담당하는 通商産業大臣 및 都道府縣知事이다.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銃器管理事務는 警察法에 근거하여 都道府縣 경찰에서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警察廳(銃器對策課)이 총기관리사무 전반의 指導, 調整에 임하고 있다.

총기관리에 관해서 규정한 銃刀法, 武器等製造法 등에 위반하는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不法銃器의 거의 전부가 警察의

押收에 의한 것이다. 또, 권총등의 密輸에 관하여는 警察과 공동하여 關稅法 위반의 조사의 관점에서의 稅關에 의한 團束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摘發成果도 올라가고 있다.

하여 적으며, 銃器를 사용한 殺人事件(미수를 포함한다.)은 1994년(平成 6년) 중에 64건(그 중, 권총에 의한 것이 62건)이며, 死亡者는 38명에 그치고 있다(인구가 약2배인 미국에서는 平成 5년(1993년)의 총기사용 殺人被害가 16,189명). 살인사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기사용 사건의 比率은 5.0%(미국에서는 69.6%)이다. 銃器發砲의 상황을 보면, 최근 5년간에 평균 약250회가 발생하였다. (표 1 참조).

II. 銃器使用 犯罪의 情勢

1. 銃器使用犯罪의 發生狀況

銃器使用 犯罪의 발생은 여러 외국에 비교

〈표 1〉 총기발포상황

연 도 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발포총수	291	241	222	233	249
사망자수	36	31	21	30	38

그러나 銃器使用犯罪의 質的 側面에서는 최근, 정치가, 대기업, 보도기관, 일반시민등을 대상으로 권총을 사용한 事件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1995년(平成 7년)에 들어서도 3월에 治安의 최고책임자인 경찰청장관에 대한 저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와 관련한 상황이 惡化되고 있다.

특히 종래에는 暴力團社會에서 사용되었던 권총이 右翼에도 확대됨과 동시에, 暴力團社會의 外部에도 銃口가 이용되게 된 것은 일본의 정상적인 政治, 經濟活動의 場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威脅으로, 일본의 良好한 治安의 根幹을 흔들만한 중대한 문제이다.

2. 銃器使用犯罪의 檢舉狀況

최근의 銃器使用 犯罪의 검거상황은 표2와 같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5년간을 通算하면, 권총을 사용한 사건의 90.5%가 폭력단 관계자에 의해서 敢行되고 있어서, 폭력단의 凶惡性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폭력단이 不法所持하고 있는 권총, 특히 폭력단 武器庫 摘發의 중요성이 浮刻되고 있다.

〈표2〉 총기사용 범죄의 검거상황

연 도 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검 거 건 수		200(173)	155(125)	176(140)	130(99)	159(117)
사 용 총 기	총	171(165)	132(116)	151(133)	97(90)	131(113)
	총, 공기총	15(4)	9(1)	17(4)	22(0)	15(1)
	기	14(4)	14(8)	8(3)	11(9)	13(3)
죄	살인	90(88)	74(67)	67(52)	39(32)	49(41)
	강도	30(24)	22(8)	45(35)	28(24)	24(8)
	흉기준비	6(6)	3(3)	2(2)	2(2)	1(1)
	상해	11(5)	11(9)	6(4)	16(2)	16(9)
	폭행	9(6)	7(6)	2(2)	7(5)	5(5)
종	공갈	7(7)	5(4)	8(8)	9(8)	8(7)
	기타	47(37)	33(28)	46(37)	29(26)	56(46)

(주) ()안은 폭력단 관계자에 의한 것임

Ⅲ. 권총團束 狀況

1. 권총 不法所持의 團束

권총을 사용한 強力事件에 對處하기 위해서 警察에서는 總力を 기울여 拳銃摘發을 強力하게 進行시키고 있으며, 1992년에는 1,450정, 1993년에는 1,672정, 1994년에는 1,747정의 권총을 押收하였다.

押收권총을 피의자별로 보면, 1994년의 경우, 폭력단으로부터의 압수가 1,242정(압수 전체수의 71.1%), 폭력단 이외의 者로부터의 압수가 505정(28.9%)이었다. 1991년 이전에는 폭력단으로부터의 권총압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比較하면, 권총의 一般사회에의 擴散傾向을 엿볼 수 있다. (표3 참조).

〈표3〉 권총 압수상황(피의자별)

연 도 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압 수 권 총 수		963	1,032	1,450	1,672	1,747
내	폭 력 단	918	954	1,072	1,196	1,242
		(95.3%)	(92.4%)	(73.9%)	(71.5%)	(71.1%)
역	폭력단 이외	45	78	378	476	505
		(4.7%)	(7.6%)	(26.1%)	(28.5%)	(28.9%)

(주) ()안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또한, 압수권총의 80% 이상이 진정(眞正) 製 권총이다(표4 참조). 권총으로, 그 대부분이 일본에 密輸入된 外國

〈표4〉 권총 압수상황(진정(眞正), 개조별)

연 도 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압 수 권 총 수	963	1,032	1,450	1,672	1,747	
내	진정권총	899	948	1,290	1,356	1,513
	(93.4%)	(91.9%)	(89.0%)	(81.1%)	(86.6%)	
역	개조권총	64	84	160	316	234
	(6.6%)	(8.1%)	(11.0%)	(18.9%)	(13.4%)	

(주) ()안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2. 권총 密輸入의 團束

미국제, 중국제 및 필리핀제의 권총이 上位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이탈리아제, 브라질 押收권총의 製造國別 內譯은 표5와 같으며, 제 권총도 매년 상당한 수가 押收되고 있다.

〈표5〉 진정(眞正) 권총의 제조국별 압수상황

연 도 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합 계	평균(비율)
미 국	313	262	407	469	489	1,940	32.3%
중 국	126	281	233	297	311	1,248	20.8%
필 리 핀	119	80	86	103	140	528	8.8%
이탈리아	41	60	66	91	82	340	5.7%
브 라 질	38	33	73	56	71	271	4.5%
스 페 인	16	24	33	23	67	163	2.7%
벨 기 에	13	15	41	33	54	156	2.6%
기 타	233	193	351	284	299	1,360	22.2%
합 계	899	948	1,290	1,356	1,513	6,006	100.0%

이들 권총中, 실제로 密輸事件으로서 檢擧 되어 압수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國內에서 발견되는 권총의 대부

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密輸入 된것이지만, 國內에서의 不法所持로 밖에 檢擧·押收되고 있지 않으며, 沿岸으로부터의 일본유입이 防止

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대규모적인 密輸事件의 檢擧가 거의 없어서, 조직적인 밀수입의 루트를 해명하여 권총의 국내에의 유입을 저

지하는 것이 당면한 重要課題로 되어 있다.

또한, 密輸入으로 檢擧·押收된 권총에 관해서, 그 搬出國家를 보면 미국, 필리핀, 태국의 3나라가 上位를 차지하고 있다(표6 참조).

〈표6〉 권총의 반출 국가별 상황

연도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합계	
합계	16	51	27	60	64	218	
주요국가	미국	3	3	15	43	2	66
	필리핀	7	48	1	9		65
	태국					61	61

검거된 事例를 보면, 密輸入時의 권총 은닉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

예컨대, 1990년에 중국으로부터 입수된 情報에 의하면 2,000정에 이르는 대량의 토크레프형 권총이 밀수입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漁船을 차용하여 沿岸의 감시가 허술한 작은 漁港으로부터 권총을 육지로 올렸다고 보여지고 있다. 1995년에 검거된 남아프리카 루트의 대량 권총밀수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어선내에 권총을 교묘하게 隱匿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는 미국으로부터 國際貨物郵便으로 보내어진 전기온수기 내에 권총이나 소총을 실탄과 함께 隱匿하고 있었던 事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 러시아인 船員등이 寄港地 상륙시에 몰래 권총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 일본인에게 強賣하여 돈을 벌고져 하는 사건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IV. 最近의 銃器對策

1. 政府의 對策

권총을 사용한 強力事件이 頻發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擡頭되어, 1994년 11월에 「銃器對策에 관한 관계 閣僚會合」이 처음 開催되어, 關係省廳이 전력을 다해 총기대책에 萬全을 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같은 해 12월에 「권총단속 대책에 관한 關係省廳 連絡會議」에서 「단속의 철저와 關係省廳의 연대강화」, 「연안(水際) 대책의 추진」, 「국제협력의 추진」 및 「국민의 理解와 協力の 확보」라는 4가지 사항을 기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對策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 들어가 情勢가 한층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9월에 열린 제2회 關係閣僚會合에서는 종래의 關係省廳 連絡會議를

昇格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달 내에 內閣會議 결정에 의해 內閣官房 장관을 장으로 하는 [銃器對策 推進本部](내각관방, 경찰청, 환경청,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수산청, 통상산업성, 운수성, 해상보안청, 郵政省)가 설치되어, 범정부적인 총기대책이 強力하게 推進되고 있다.

2. 警察의 銃器 對策

가. 銃刀法의 改正

最近의 총기정세의 惡化에 비추어 보아, 1994년 12월에 실시된 關係省廳 連絡會議의 협의에 있어서, 권총사범에 대한 法制의 강화가 요청되었고, 1995년 3월, 銃刀法의 일부 개정법안이 국회에 提出, 가결되어 1995년 6월 12일부터 施行되고 있다. 개정의 point는 다음과 같은 3가지 事項으로 集約된다.

첫째로, 권총등의 發射에 대한 規制가 強化되었다. 이미, 1993년의 銃刀法개정으로 권총등을 실탄과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는 권총등의 사용에 대한 危險性, 惡性을 문제로 加重所持罪로 무겁게 처벌해 왔지만, 발사행위 그 자체는 銃刀法上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95년의 法改正에서는 공공의 평온에 대한 危險犯으로서 發射罪를 신설하여, 공공의 장소·교통 수단에 있어서, 또한, 이들을 향하여 권총등을 발사한 경우에는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に 처하게 되

었다. 또한, 권총실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災害防止의 관점에서 火藥類團束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이번의 銃刀法 개정서는 권총실탄의 所持, 密輸등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禁止하며,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懲役, 밀수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엔이하의 罰金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번 銃刀法 개정에서 도입된 권총등을 제출한 自首에 대한 필요적 減免規定과 마찬가지로, 권총의 실탄에 관해서도 이것을 제출하여 자수하면, 죄가 반드시 減輕 또는 免除토록 하였다.

둘째는 권총등의 밀수방지를 위한 규정이 整備되어 영리목적의 밀수입, 권총부품의 밀수입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권총 밀수입의 豫備罪등을 범한 사람이 밀수의 실행 着手前에 자수할 때의 필요적 減免規定이 신설됨과 동시에, 國外에서 권총등의 밀수입의 資金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밀수입 대책으로서 유효한 搜查手法인 Clean Controlled Delivery(通關등을 할 때에 권총등을 빼내거나 또는 별도의 물품과 바꾼 후의 監視付移轉)를 실효있게 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셋째는 경찰관 등의 권총이나 권총실탄 등의 讓受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경찰관 또는 海上保安官이 권총등에 관한 범죄수사에 임하여, 권총등의 讓受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온 경우에, 都道府縣

公安委員會의 허가를 받아, 권총등의 讓受등의 금지를 해제하는 규정으로, 소위 「陷奔捜査」의 효과적인 실시에 이바지하는 규정이다.

나. 銃器 摘發體制의 強化

惡化하는 銃器情勢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총기 적발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4년 7월, 새롭게 경찰청 生活安全局 내에 「총기대책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1995년 봄까지 전체 都道府縣 경찰에 銃器對策課 내지는 銃器對策室을 설치하여, 총기단속에 대한 專從體制를 도모하였다.

게다가, 1995년 8월에는 都道府縣 경찰에 本部長을 長으로 하는 [총기단속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조직의 總力を 다하여 권총등 총기의 密輸·密賣 루트의 해명과 폭력단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총기의 摘發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같은 해 7월에는 시즈오카현(靜岡縣) 경찰과 오키나와현(沖繩縣) 경찰에 의한 遠洋 마구로 어선원 등에 의한 남아프리카를 루트로 하는 권총 밀수사건의 摘發, 9월에는 아이치현(愛知縣) 경찰에 의한 폭력단의 武器庫의 적발등, 성과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다. 密輸入 防止를 위한 國內外 協力體制의 強化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간에 押收되는 1,500~1,700정의 권총중, 약 80%, 90%가 해외에서 密輸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년간에 불과 수십정의 권총밖에 密輸罪로 檢舉, 押收되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권총의 根絶을 위해서는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協力은 물론, 경찰과 외국 수사기관 등과의 協力を 보다 한층 더 추진하여, 海外로부터의 권총流入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는 연안(水際)에서 권총의 押收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적발의 推進, 정보교환의 活潑化 등을 도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어업관계자등 民間에 의한 연안(水際) 감시체제의 강화, 어업, 해운, 항공업계로부터의 수사협력의 確保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 수사기관 등과의 協力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도 경찰청이 외국에 있는 證據資料, 各種情報의 收集등을 위해 ICPO(국제형사경찰기구) 또는 외교 루트에 의해 외국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照會, 捜査共助要請 등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해외출장, 국제회의, 총기관리 seminar의 개최등을 통하여, 외국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1994년은 11월부터 12월에 걸쳐 東京都內에서 미국·중국·러시아등 8개국 1기관의 捜査實務 담당자 참가하에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총기 부정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교환의 活性化, 압수총기 추적의 迅速化 등에 관한 討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하여, 1995년에는 각국의 高級 實務

者級에 의한 [총기대책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國際協力の 본격화를 향한 협의를 하였다.

외국당국의 協力を 얻어 立件할 수 있었던 밀수등의 事件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990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에 걸쳐서, 홍콩경찰 및 중국경찰의 協力を 얻어 폭력단 幹部에 의한 중국계 권총의 대량 밀수입사건의 수사를 실시하여, 권총 97개를 押收함과 동시에 관계피의자 16명을 檢擧하였다.
- 1992년 5월, Gun Menia인 일본인의 사등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歸國할 때, 권총 1개를 隱匿하여, 밀수입을 圖謀한 사건에서는 미국 커스텀즈 등의 協力에 의해 輸入 豫備罪로 입건, 檢擧할 수가 있었다.
- 1993년 7월에는 폭력단원에 의한 권총 不法所持事件 정보의 입수를 단서로 하여, 해당 권총의 밀수입 피의자로서 前일본항공 파이롯트를 알아내어, 마찬가지로 미국 커스텀즈 등의 協力에 의해, 同人에 의한 권총 밀수입 사건을 檢擧하였다.
- 1993년 8월부터 다음 해 4월에 걸쳐서 Russia Khabarovsk주 경찰로부터의 密輸容疑 정보를 端緒로 數道縣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Russia 선원에 의한 권총 1자루의 국내 搬入事案을 불법 소지죄로 檢擧하였다.

1995년 7월에 검거한 漁船員 그룹에 의한 남아프리카로부터의 대량 권총 密輸事件에서는 남아프리카 경찰의 協力を 얻어 권총의 구입사실등의 수사를 실시하여, 事件을 立件할 수가 있었다.

그 밖에, 極東地域을 중심으로 많은 各國으로부터 정보제공등의 協力を 받고 있다.

최근, 일본에 있어서 권총의 不法所持가 增加하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인의 海外渡航이나 외국인의 一時 來日(來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 해외로부터 권총을 가지고 들어오는 機會가 증가하고 있는 事情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 수사 協力の 한층 강화를 圖謀함과 동시에, 국제정보의 收集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해 권총 밀수입 사건의 단속을 強力하게 推進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편에서, 여러 외국에 있어서의 銃器管理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ICPO나 외국 수사기관으로부터의 照會등에 성실하게 對應하는 것은 물론, 情報나 data의 적극적인 외국 수사기관 등에 대한 提供, 일본의 총기 관리제도의 해외에 대한 紹介등에 의해 國際協力を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3. 國際聯合 등에 있어서의 銃器 規制의 推進

銃器는 合法, 非合法의 양면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去來되고 있어서, 국제적인 協力없이 하나의 국가만으로 충분한 銃器管理를 하는

것은 매우 困難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情勢를 考慮하여, 일본은 1995년 5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연합 범죄방지회의에 銃器 規制에 관한 決議案을 提出하여 採擇되게 한 바 있다.

결의의 名稱은 「犯罪의 防止와 社會의 安全을 위한 銃器 規制」로 이 결의에 의해서 국제연합의 場을 통하여, 총기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금후의 국제적인 協力方策을 探索해 가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 외에, 일본에서는 1995년 10월에 북경에서 開催된 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제64회 총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결의를 성립시켰고, 1995년 6월에는 아시아의 제국을 동경에 초치(招致)하여 [국제 총기관리 seminar]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展開하고 있다.

4. 國民의 理解와 協力の 確保

銃器가 국민에게 있어서 身邊의 가까운 威脅으로 되고 있는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國民의 理解와 協力を 구하여, 官民一體가 되어 違法的인 총기의 根絶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警察廳에서는 1995년 10월에 [銃器根絶을 위한 國民의 모임]을 개최하는 등, 民間에 대한 作用을 강화하고 있으며, 今後도 정부 전체로서 국민에게 呼訴해 가기로 하고 있다.

부표1: 권총등에 관한 罰則 一覽表

(銃砲刀劍類 소지등 단속법상의 벌칙)

罪 名		法 定 刑
권 총 본 체 관 계	권총등의 發射	無期 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
	권총등의 輸入	3년 이상의 有期懲役
	同영리목적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情狀에 의해 1,000만엔 이하의 罰金併科
	권총등의 所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懲役
	加重所持	3년 이상의 有期懲役
	권총등의 讓渡 등	1년 이상 10년 이하의 懲役
	同영리목적	3년 이상의 有期懲役, 情狀에 의해 500만엔 이하의 罰金併科
권총 등의 輸入豫備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	

해외 정책 정보

	수입자금 提供 등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 등의 讓渡 등의 주선	3년 이하의 懲役
권총부품 품관계	권총부품의 輸入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부품의 所持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부품의 讓渡 등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부품이 讓渡 등의 주선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 실 탄 관 계	권총실탄의 輸入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0만엔 이하의 罰金
	同영리목적	10년 이하의 懲役, 情狀에 의해 300만엔 이하의 罰金併科
	권총실탄의 所持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
	권총실탄의 讓渡, 讓受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만엔 이하의 罰金
	同영리목적	7년 이하의 懲役, 情狀에 의해 200만엔 이하의 罰金併科
	권총실탄의 讓渡, 讓受의 주선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만엔 이하의 罰金

(주)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이 있는 벌조에 관해서도, 정상에 의해 병과할 수 있다.

(武器等 製造法上の 罰則)

罪 名	法 定 刑
영리목적 권총 등 製造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有期懲役, 情狀에 의해 500만엔 이하의 罰金併科
권총등 製造	3년 이상 15년 이하의 懲役

부표2 : 銃器를 둘러싼 국제정세

1994년 11월에 동경에서 제2회 「총기대책 국제회의」 開催時 참가국의 발표내용

인도네시아

- 銃器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銃器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것은 아님.
- Security 관계의 사람이나 정부의 高官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20년간 총기의 押收는 4만 3,000개에 달함.

- 최근 少量이지만 총기가 국외로부터 流入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는 郵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分解하여 가지고 들어와 組立하는 방법이 漸增하고 있음.

중 국

- 1993년중의 총기의 부정거래사범은 1,430건, 총기에 의한 殺人事件 및 強盜 事件을 2,440건을 기록하고, 전년도와 比較하여 각각 19%, 56% 상승.
- 개인이 所有하는 銃器에 대해서는 1992년 8월에 「불법소지 총기의 押收 通告」 제도를 導入하여 規制하고, 최근 2년간에 합계 39만개의 총기를 押收.
- 총기의 流入은 베트남, Laos, 미얀마 등 남부의 國境으로부터 눈에 띄게 행해지고, 총기 부정거래인의 대부분은 국경지대에 살고, 총기의 거래로 인해 巨額의 富를 얻고 있음.

필 리 핀

- 필리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많은 총기가 放置되어 그 총기를 犯罪者가 손에 넣기 시작하여, 총기에 대한 需要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의 要求에 응해서 부도덕한 사람이 파르티크라고 불리는 手工品 위법총기를 製造하기 시작하여, 특히 세브섬에서 盛行.
- 필리핀에서는 외국제 총기의 需要가 많고, 다량의 총기가 密輸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짐에 섞여 들어오기도 하고, 稅關職員이 默認해 주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港口로부터 密輸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密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近海의 海上에서 거래되고 있음.

러시아연방

- 銃器法에서 총기의 종류를 군용총, 경비경찰용총, 민간용총에 나누어, 이것들의 製造, 販賣, 所持, 保管 등을 규제하고 있음.
- 현재, 登錄銃器의 보유자수는 300만명(400만개)으로 올라 있음.
- 범죄의 增加, 치안의 惡化와 동시에 護身用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極東地球에서는 마피아의 浸透를 막기 위해서 단속조직의 整備를 실시.

타 이

- 총기의 수입은 法令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適法의 총기가 犯罪者에게 비싼 값으로 販賣되어 불법총기로 바뀌고 있음.
- 또한, 違法의 총기가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武器商人에 의해서 미얀마의 약물 범죄조직에게 販賣되고 있는 예도 있음.

미 국

- 총기의 違法去來(위법한 賣買라든지 密輸 등의 범죄행위) 및 不正去來(총기의 正規的인 수출이 국경을 넘은 후에, 許可 內容과는 다른 것으로 變更되는 행위)에 관하여, 과거 3년간 450명 이상을 검거하여 대량의 총기를 押收.
- 현재 直面하고 있는 총기문제는 세계 총기의 需要와 供給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합법적인 去來나 注文이 飛躍적으로 증가 趨勢.